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1
----------	------

제출년월일 : 2014 . 3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명을 바꾸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나. 기금 존속기한 신설 : 2023년 12월 31(안 제3조제4항)

다. 새로운 용어 추가(안 제2조)

- 최저가격,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계통출하, 차액

라. 가격안정 차액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과 범위 규정(안 제9조)

- 사과 : 20,000m²까지

- 고추, 복숭아 : 10,000m²까지

- 밤 : 50,000m²까지

- 한우 : 연간 출하 두수 30두까지

마.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 지원 대상 농가 규정(안 제10조)

- 사과, 고추, 복숭아 : 1,000m² 이상 재배

- 밤 : 30,000m² 이상 재배

- 협동조합을 통하여 한우 5두 이상을 계통 출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불임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4.1.29.~2.19.)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안정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업·축산·원예·어업 농가
 - 나.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 다. 농업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 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으로 총 100 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과 수수료
2.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3.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충주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2장 이자 차액 보전

제7조(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사업)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

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자 차액 보전) ① 시장은 융자 금액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 한다.

② 이자 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제9조(지원 대상 농림축산물과 범위) ①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은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인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로 한다. 단, 제6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작물 등을 확대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 : 20,000m²까지

2. 고추, 복숭아 : 10,000m²까지

3. 밤 : 50,000m²까지

4. 한우 : 연간 출하 두수 30두까지

제10조(지원대상 농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사과, 고추, 복숭아 중 한 작물 재배면적이 1,000m² 이상

2. 밤 재배면적 30,000m² 이상

3. 협동조합을 통하여 한우 년 5두 이상을 계통 출하

제11조(지원 신청)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계통출하증명서를 붙여 읍·면·동장에 신청한다.

제12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

하고 소식지, 판내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차액 지원) 차액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차액 지원 관리)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의 지원 신청,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 고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4장 세입 · 세출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20조(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농업안정기금 조성(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현행 충주시농업발전기금조례 제3조(기금의조성)

3. 미첨부 사유

- 현행 충주시농업발전기금조례 제정시 김토됨

4. 작성자

- 농업정책국 농정과장 정창열